

교원인사위원회규정

1997.06.02.제정	2001.02.01.일부개정	2007.06.26.일부개정	2011.04.20.일부개정
2012.07.22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	<u>2023.06.29.일부개정</u>

<교무팀>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위원회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교수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에서 합의하여 추천하는 1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. 단, 위원의 20%이상은 여성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, 2023.06.29.)

제3조 (임기) ① 총장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개정 2011.4.18., 2018.7.1., 2021.6.1.)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) ① 위원장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총장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여도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총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6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1.4.20, 2012.7.22.)
1. 교원의 신규임용, 승진 및 재임용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
2. 부총장, 처장, 대학원장, 학(부)장 등의 보직임명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
3. (삭제 2001.2.1.)

4.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가 제7조 1항 1호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그 임용 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4.20, 2012.7.22.)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,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

제8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 (간사)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(개정 2001.2.1.)

제10조 (운영세칙) 본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제4조는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2항은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